

# 대형건축물·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·교육 강화 주요 내용 안내

- 화재예방법, 특급·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 제출, 요양병원 등 불시 훈련 신설 -

- 관련법령 : 「화재예방법」 제37조(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)
- 시행일자 : 2022. 12. 1.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공포('21. 11. 30.) 및 시행('22. 12. 1.)으로 변경되는 대형건축물·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·교육 강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【화재예방법 제37조 주요내용】
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②
  - 특급·1급 대상 훈련결과 30일 이내 의무제출(신설)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③, ⑤
  - 의료시설, 노유자 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→ 불시 훈련·교육
  - \* (불시 소방훈련 대상) 「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의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 시설,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
  - (서식)소방훈련·교육 실시 결과서

- 협조사항
  -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
  -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
    -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서 →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 통지
    -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훈련 요청에 따라야 함
- 처벌기준
  -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소방서 현장대응단(☎ 033-576-0119)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